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026년 제1차 소속시설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2월 30일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I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채용인원	고용 형태	직무내용	비고
합계		14명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임 (육아휴직대체)	1명	계약직	◦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노인학대예방 사업 등의 업무수행	
장수군가족센터	사례관리사	1명	정규직	◦ 취약 긴급 위기가족 사례관리 ◦ 교육 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 센터업무지원	
	방문교육지도사	1명	정규직	◦ 다문화가족 방문 부모교육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	계약직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사업 ◦ 기타 센터업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1명	임기제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총괄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 관리 및 시행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구축 -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돌봄직	2명	계약직	◦ 사회복지시설 지원 업무 (파견 기관에 따라 근무내용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주임 (출산육아휴직대체)	1명	계약직	◦ 센터 업무 전반(경영지원, 환경지원, 자립정책)	
	주임 (육아휴직대체)	1명	계약직	◦ 센터 업무 전반(경영지원, 환경지원, 자립정책)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팀원 (고립·은둔팀)	5명	계약직	◦ 대상자(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초기상담 ◦ 대상자(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온라인 및 방문상담, 대상자 관정, 지원계획 수립) ◦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동생활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고립·은둔청년) 가족지원(상담, 자조모임 등)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2. 근로조건

구분	채용직위	근무기간	보수기준	근무형태	근무지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임 (육아휴직대체)	임용일~'26. 4. 30. (근로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사회, 노인」이용시설_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주 5일 (주 40시간)	김제
장수군가족센터	사례관리사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 기본급 가족사업안내 호봉 기준표에 따름 · 명절수당 연2회(기본급 60%씩 설, 추석 명절 지급)	주 5일 (주 40시간)	장수
	방문교육지도사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II」 지도사 시급 적용	주 5일 (주 16시간)	장수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 사업 전담인력	임용일~'26. 12. 31. (근로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	· 가족사업안내 호봉기준표에 따름 (팀원 5호봉까지 경력 인정 가능)	주 5일 (주 20시간, 1일 4시간)	장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임용일~2년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내 근로계약 연장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지침 준용 - 기본연봉 34백만원~66백만원 - 부가급여 별도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체안치원센터	돌봄직	임용일~'26. 12. 31. (사업연장 시 근무 평가를 통한 연도별 계약연장 결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주 5일 (주 40시간)	도내 14개 시·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주임 (출산육아휴직대체)	'26. 3. 1.~'27. 5. 29. (육아휴직 복직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기본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장애인」이용시설_일반직 4급) · 수당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주임 (육아휴직대체)	'26. 4. 1.~'26. 10. 29. (육아휴직 복직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기본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장애인」이용시설_일반직 4급) · 수당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팀원 (고립·은둔팀)	임용일~'26. 12. 31. (근로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	· 기본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 노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선임사회 복지사 4호봉 기준 · 명절수당 연2회(기본급 60%씩) · 가족수당공무원기준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 공통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위탁사업, 계속사업 종료 시 근로관계 종료(정규직 포함)

※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특성상 주중 18:00 이후 및 휴일의 경우 착신통화 전환조치를 통해 신고
전화의 접수, 상담 및 응급사례 발생 시 즉시 현장조사가 가능해야 함

※ 장수군가족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및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은 9:00~19:00 내에서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재공고 시, 주임(출산육아휴직대체) 근무기간은 임용일~'27. 5. 29., 주임(육아휴직대체)
근무기간은 임용일~'26. 10. 29.까지로 함

1. 공통요건

※ 공통요건, 응시자격기준, 가점사항은 공고일 전일 기준임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단, 전북특별자치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만18세 이상 만65세 이하

- 거 주 지 : 공고일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결격사유 : 채용분야별 다음 결격사유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분	채용직위	결격사유
공통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임(육아휴직대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장수군가족센터	사례관리사,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돌봄직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상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주임(출산육아휴직대체), 주임(육아휴직대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팀원(고립·은둔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전담 기관 인사 규정에 따른 사유 적용(결격사유 확인)

2. 응시자격 기준

구분	채용직위	자격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임 (육아휴직대체)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장수군가족센터	사례관리사	○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2.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 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상근근무)
	방문교육지도사	○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임용일 전 양성교육 이수한 지도사에 대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로 임명 ※ 단, 양성교육 중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회차에 있는 양성교육 중 집합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방문교육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집합양성교육 없이 응시 가능(단, 임용일 전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8시간 이수 필수)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2.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6급 또는 6급 상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관련업무 - (2호) 공공기관의 행정업무 경력(경영·사업관리 등 행정) - (4호) 분야별 기준을 만족하는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단체’의 행정업무 경력(경영·사업관리 등 행정)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체육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 (유관단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정대상경력 기관 - 단,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중 유사경력의 ‘가목·고목·소목·초목’은 제외 ※ (해당분야) 사회복지, 문화, 체육 관련 학위 * 문화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관련 학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체근로지원센터	돌봄직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4. 위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주임 (출산육아휴직대체)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임 (육아휴직대체)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팀원 (고립·은둔팀)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정신건강전문요원 2. 심리·상담 관련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 ※ (관련 자격) 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2급), 전문상담사(2급)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자 또는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 근무 경력 2년 이상 4.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무자격은 최소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관련분야) 사회복지, 사례관리, 심리상담, 취업지원 등 ※ 우대사항 - 청소년 또는 청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전담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청소년동반자 등 사례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족돌봄 경험이 있는 사람(당사자) - 심리·상담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인 사람 - 고립·은둔 또는 민간·공공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
-------------------	----------------	--

3. 가점사항

구분	요건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만점의 5%

* 가점사항은 면접시험에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산점 적용

III

채용일정 및 세부사항

1.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5. 12. 30.(화)~'26.1. 19.(월)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청, 클린아이 등
응시원서 접수	'26. 1. 13.(화)~1. 20.(화)	○ 채용사이트에서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1. 28.(수)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면접시험	2. 3.(화)	○ 장소 : 전주
최종합격자 발표	2. 5.(목)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임용예정자 등록	2. 10.(화)~2. 12.(목)	○ 사회서비스원
임용	2. 13.(금)	○ 임용 시 근무일 변경 불가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주임(출산육아휴직대체)은 '26. 3. 1. 임용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주임(육아휴직대체)은 '26. 4. 1. 임용 ○ 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보건복지부 승인 후 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합격자 인원내 따라 단축 또는 변동 가능

2. 세부사항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1. 13.(화) ~ 1. 20.(화), 18:00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jeonbukpass.fairyhr.com/>)
 -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직무수행계획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만 작성
- 유의사항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 자격기준 중 필수사항(경력, 자격증, 교육 등)은 지원서에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적격 여부 확인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서류심사

- 심사대상 : 지원서 접수자 전원
- 합격인원 : 합격기준 적합자 전원
- 합격기준
 - 자격기준 부합 여부 및 제출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등 작성 내용이 현저히 불성실한 응시자는 서류 부적격 처리
- 유의사항
 - 서류심사는 증빙서류 없이 지원서에 기재사항으로 심사하고, 추후 면접시험 시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기재 및 기재 착오 등이 있을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시험

- 시험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 예비합격자명단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부여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진행방법 : 면접위원별 블라인드 질의응답식 심층면접
- 합격기준
 - 공적 책무성·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 여부, 이해력 및 지식수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인성과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심사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결정(면접위원 합계 평균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할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함)
-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면접점수 우선 항목별 고득점 순
 - (① 공적 책무성·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 여부,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 창의성 및 전문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인성과 직업관)

- 제출서류

- 면접시험 당일 유효기간 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면접 시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비고	발급기간
공통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초본으로 확인이 불가 시 병적증명서 제출)	공고일 이후
해당자	자격증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기간 무관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지 폐업 등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단, 폐업 사실증명 제출(세무서 발급 가능) *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교육이수	교육이수 증빙(교육이수가 응시 자격기준인 경우) * 노인학대예방교육, 양성교육, 건강가정사 등 ※ 노인학대예방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 교육 센터 등의 수료 증빙자료임(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에서 교육이수 가능기관 확인 가능)	공고일 이전
	재직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공고일 이후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공고일 이후

○ 유의사항

- 접수 시 공고내용 미확인,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미기재, 지원서 형식 미사용, 연락불능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 불가
- 응시자는 접수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분야의 응시자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없는 경우 포함) 등에는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출 필요
- 채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안내문을 참조하여 해당 양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기획팀(063-906-403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